

제406회 임시회
'23. 1. 16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1월 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「지방세법」 인용조항 수정(안 제6조)
(현행) 「지방세법」 제10조제4항 → (개정) 「지방세법」 제10조의6제4항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,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에서 인용하는 「지방세법」 제10조제4항이 「지방세법」 제10조의6제4항으로 개정되어, 이를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참고: 지방세법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비교>

지방세법 개정 전	지방세법 개정 후
<p>제10조(과세표준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⑧ 생략</p>	<p>제10조(과세표준의 기준)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(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</p>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